

보도자료

2012년 2월 9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광고정책팀 김광동 팀장(☎750-2315)
광고정책팀 김지원 사무관(☎750-2324) aquarius@kcc.go.kr

미디어랩법 국회 통과, 방송광고시장의 새로운 전기 마련

- 방통위, 관련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과 중소방송 지원을 담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랩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08.11)에 따른 관련 입법 지연으로 2년 이상 발생해온 방송광고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헌적 상태가 이번 미디어랩법 제정을 통해 해소되었고, 방송광고시장의 기본적 질서가 새롭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독점이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방송광고시장이 활성화될 전기가 마련되었고, 아울러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소방송의 광고판매 지원이 제도화되어 방송의 다양성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방통위는 미디어랩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① 미디어법 하위법령 조속히 제정(시행령, 고시)

첫째, 미디어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및 고시를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법 공포후 3~5개월 예정). 시행령 및 고시에 담길 주요 내용은 미디어법 허가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절차, 금지행위 세부유형, 미디어법의 회계정리 기준,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 등이다(붙임2 참조).

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신공사) 설립

둘째, 기존 KOBACO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디어법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업무 및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방통위는 미디어법 경쟁환경과 스마트시대 광고산업 환경에 맞춰 신공사의 기능·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신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설립기본계획 수립, 임원선임, 법인登記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유통기반 구축, 공익광고 등

③ 민영 미디어법 허가

셋째,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민영 미디어법 허가심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디어법 허가심사에서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 △중소방송 지원방안(결합판매 지원·광고매출 배분 등)의 적절성, △경영계획(조직·인력운영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고, 중소방송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예정이다.

** 고시 제정, 허가심사 기본계획 마련, 허가신청 접수, 심사위원 구성, 허가심사, 위원회 의결

④ 결합판매 할당고시 등 중소방송 지원

넷째, 민영레퍼 허가시점에 맞춰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을 고시하고, 전파료 배분, 중소방송의 자체광고 판매지원에 대해서도 허가심사시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허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 이전까지 미디어레퍼법 경과규정에 따라 지상파를 대행하고 있는 미디어레퍼가 중소방송에 대해 현행 수준으로 광고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디어레퍼 허가심사시 그간 지원실적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 주요내용 : 미디어레퍼별 중소방송 의무지원대상,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할당규모 등

정부는 이번 미디어레퍼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방송광고시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킴과 동시에 방송의 다양성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1. 미디어레퍼법 후속조치 주요 일정(안) 1부
2. 시행령·고시 제정사항(안) 1부
3. 위원회 중소방송 지원 방향('12.2.3 위원회 보고안건) 끝.

【붙임1】 미디어법 후속조치 주요 일정(안)

내용	일정
신공사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2월 말
신공사 임원 공모	3월 중
한국광고진흥공사(신공사) 설립	5월 말
시행령 제정	5월 말
고시 제정	7월 중
미디어법 허가신청 접수 공고	7월 중
미디어법 허가심사 및 허가	8월 중

<참고> 시행령·고시 제정 절차도

시행령 제정 절차	고시 제정 절차
위원회 보고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규제심사 ↓ 위원회 의결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관보게재)	위원회 보고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규제심사 ↓ 위원회 의결 ↓ 고시(관보게재)

【붙임2】 시행령·고시 제정사항(안)

□ 시행령 제정사항

후속조치	관련 법조항
지상파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의무위탁 예외사항	5②
판매대행사 허가의 세부요건·절차	6④
판매대행사의 변경허가 등의 절차 등	8⑤
판매대행사의 재허가·허가취소 등의 절차·기준	10, 11
판매대행사의 소유제한 관련 특수관계자 범위	13②
금지행위 세부유형·기준	15
방송광고 수수료의 구체적인 범위	16
중소지상파의 판매대행사 지정	19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의 세부사항	23⑧
공사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	26④
협회의 사업·감독에 필요사항	35③
판매대행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38④
과태료부과 징수 기준	44②

□ 고시 제정사항

후속조치	관련 법조항	위임근거
판매대행사 허가의 세부요건·절차	6④	시행령
판매대행사의 변경허가 등의 절차	8⑤	시행령
판매대행사의 재허가·허가취소 등의 절차·기준	10, 11	시행령
판매대행사의 소유제한 관련 특수관계자 범위	13②	시행령
금지행위 세부유형·기준	15	시행령
판매대행사의 회계정리 기준	17	법률
5년간 지역·중소지상파에 대한 결합판매 평균비율	20	법률
판매대행사별 지원대상 지역·중소방송사, 각 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20	법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	23	시행령

※ 시행령을 위임근거로 한 사항들은 방송법상 유사조항과의 비교에 따름

【붙임3】 위원회 중소방송 지원 방향('12.2.3 위원회 보고안건)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중소방송을 지원할 계획임

① 네트워크 지역방송의 전파료는 미디어렐 허가요건·조건으로 지원

- 미디어렐 허가심사시 중앙-지역 방송사간 협의에 기반한 지원 계획을 평가하고 허가조건 부과를 통해 이를 보장

② 중소방송의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

-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공·민영렐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부과

③ 네트워크 지역방송사의 자체광고 판매 지원

- 미디어렐 허가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의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공·민영렐의 지역지사 설립·운영 등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 등으로 부과

④ 기타 정책적 지원

-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제한 규정을 자체제작 규제로 전환하는 입법이 발의되어 법안소위에 계류 중

- 중소방송이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제작협찬 기 허용 ('11. 8월)
- 중소방송의 경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검토